

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9
----------	---

발의년월일 : 2000. 9. 1
발 의 자 : 고문식 의원 외 2인

1. 주문

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세입·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(안)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- 구성위원수 : 8인
 - 위원장 : 1 인
 - 간 사 : 1 인
 - 위 원 : 6 인
- 위원선임방법 :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.
- 위원회 활동범위 : 2005회계연도 세입·세출결산(안) 및 예비비 지출승인(안) 심사
- 위원회 활동기간 : 2005회계연도 세입·세출결산(안) 및 예비비 지출승인(안) 심사 완료시 까지

2. 제안이유

중구청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·세출결산(안) 및 예비비 지출승인(안)을 심사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하고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함.

【 관계법령 】

지방자치법 제 50조(위원회의 설치)

- ①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소관의안건과 청원들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제7조(특별위원회)

-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(위원의선임)

- ①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-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.